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98075 손해배상(지)
원 고 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정공진
피 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안 담당변호사 유효석
2. C
변 론 종 결 2026. 7. 3.
판 결 선 고 2026. 8.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품설계, 시스템 모니터링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D' (변경 전 컴퓨터프로그램명: E,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일체형 비데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2020. 2. 3.부터 2021. 5. 21.까지 피고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년경 'IP 주소 (IPv4 1 생략)가 할당된 장소인 피고 회사의 컴퓨터 중 MAC 주소가 (MAC주소 1 생략)인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2021. 2. 25.부터 2021. 5. 11.까지 15회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컴퓨터 사용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서울서초경찰서는 피고 회사를 압수수색하여 이 사건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 5.0 버전이 2021. 8. 2.자로 무단 복제되어 있는 현황을 확인하였다.

라.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는 피고 C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 무단 복제 및 사용 시기에 이 사건 컴퓨터를 사용한 직원으로 특정한 후 2022. 4. 22. 피의자신문하였다. 위 사법경찰리는 피고 C에게 F 프로그램 접속 기록 등을 열람시킨 후 2021. 2. 15.부터 같은 해 5. 11.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신문하였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교육용으로 대학생 등에게 사용을 허락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정품을 대학생 인증을 받아 복제한 것이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 C은 2023. 4. 20.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약424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7호증, 을가 제1 내지 5,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C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참조).

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



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C이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C은 2020. 2. 3.부터 2021. 5. 2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22. 4.경 이 사건 컴퓨터에서는 2021. 8. 2.자로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 5.0 무단 복제 버전만 발견되었다. 피고 C은 2021. 8. 2.경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기에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 5.0 버전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갑 제13호증, 을가 제4,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가 교육용으로 대학생 등에게 사용을 허락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정품을 대학생 인증을 받아 복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 C이 원고가 사용을 허락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정품을 복제한 이상, 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교육용 버전을 사용 허락받은 사용자가 원고의 약관에서 정한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교육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C이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갑 제4호증의 크랙 정보가 피고 C이 피고 회사 내의 이 사건 컴퓨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 3.0 무단 복제 버전이 2021. 2. 25. 설치된 후 2022. 10. 31.까지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크랙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2022. 4.경실제 이 사건 컴퓨터에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 3.0 무단 복제 버전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프로그램 5.0 무단 복제 버전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프로그램 3.0 무단 복제 버전이 이 사건 컴퓨터에 2022. 10. 31.까지 복제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갑 제4호증의 기재를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점을 인정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앞서 1.라.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교육용으로 대학생 등에게 사용을 허락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정품을 대학생 인증을 받아 복제한 것이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피고 C의 인정 취지 진술은 위 나)항에서 기재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과 구분하지 못한 데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 3.0 버전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내의 이 사건 컴퓨터에 2021. 8. 2.자로 무단 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 5.0 버전이 2022년 초경까지 존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5.0 버전이 피고 회사의 직원에 의하여 무단 복제되어 이를 피고 회사의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 C이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2.가.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